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8 (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9. 26(화)
- 다. 상정일자 : 2006. 9. 27(수)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9.27)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조례 제1803호(2006. 7. 7 공포)에 의거 2006. 10. 7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7. 9. 1”로 개정함. (안 부칙 제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가.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2006. 6. 23)하여 오는 10월 7일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1년간 시행을 유보하고자 부칙의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 9. 1"로 변경
하는 것으로

나.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2006. 9. 2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조례 제1803호(2006. 7. 7 공포)에 의거 2006. 10. 7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7. 9. 1”로 개정함.

3. 참고자료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 나. 관련법령 : 붙임 2
- 다.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2006.9.22~9.25)
-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마.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바. 강릉시 협조공문 사본 : 붙임 3

평창군조례 호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조례 제1803호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 칙(조례 제1803호)</p> <p>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부 칙(조례 제1803호)</p> <p>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평창군조례 호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조례 제1803호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